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가합501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너스

담당변호사 김은지, 최성만

변론 종결2023. 6. 9.

판결 선고2023.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1. 6.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6. 17. 접수 제62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21. 6. 1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선행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12. 16.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같은 날 위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3. 1. 17.자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은 피고보다 선순위인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기하여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 배당절차는 그에 관한 이의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8,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로 지목된

법률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까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69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22. 12. 16.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설정계약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이 그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한편 원고는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희

판사김혜령

판사윤영수

별지

1) 원고는 2023. 6. 21.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피듯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그 자체로 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